

실업 보험 행정법 판사 청문회

본 정보는 뉴욕 주 노동부 에서 제공한 것으로, 실업 보험 행정법 판사 섹션의 실업 보험 행정법 판사가 진행하는 청문회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부에서 우편으로 보내드린 ‘실업 보험 수당 청문회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양식 TC 424.2) 팸플릿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labor.ny.gov/formsdocs/ui/formsandpublications.shtm> 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실직 상태에 있는 동안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귀하는 지시대로 지속적으로 수당에 대해 증명하고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귀하의 케이스와 관련한 서신에는 행정법 판사 케이스 번호와 귀하의 사회 보장 번호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행정법 판사는 누구인가요?

행정법 판사는 공평한(공정한) 의사 결정자로 노동부와는 관계없이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행정법 판사는 귀하의 청문회를 진행하고,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모든 사실을 주의 깊게 검토하며, 귀하의 실업 보험 수당 자격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청문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귀하는 청문회에서 귀하를 대변할 변호사나 기타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법으로 제한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가 항소위원회에 등록된 대리인이 아닌 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문회의 결과로 청구인이 수당을 받게 되고 항소 위원회에서 그 비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청구인의 대리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지역 법률 지원단체나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및 공인 대리인 목록”(LO 424.4 양식)은 www.uiappeals.ny.gov/ 을 방문하여 Resources 탭을 클릭하여 확인하십시오. 귀하는 청문회 이전에 귀하의 케이스 전체 파일을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877) 880-3322 번으로 실업 보험 행정법 판사 섹션에 전화하거나 (888) 209-8124 번으로 노동부의 전화 청구 센터에 전화하십시오.

행정법 판사는 청문회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청문회 중에, 행정법 판사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모든 당사자 출석 확인 및 관련 사안에 대한 간략한 개요 설명
- 선서 또는 약속 후 모든 당사자의 증언 청취
- 필수적인 사실 획득을 위해 당사자 및 증인에게 질문
- 당사자들이 증인들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지원
- 문서 또는 증언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결정
- 관련 기록 및 증언을 위해 출두해야 하는 사람에게 소환장 발부
- 당사자들이 케이스 제시에서 케이스 파일의 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청문회에서 나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청문회 중에, 귀하는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 귀하의 입장을 대변해 증언
- 변호사나 귀하를 대리할 다른 사람을 배석
- 귀하의 입장을 증언할 증인 보유

- d. 문서, 기록 및 기타 증거를 기록으로 제공
- e. 행정법 판사에게 제시할 문서 및 귀하의 입장을 증언해 줄 증인에 대한 소환을 요청
- f. 반대측 및 불리한 증인에게 질문(또는 “반대 심문”)
- g. 질문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행정법 판사에게 도움을 요청
- h. 이해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 답변 거부
- i. 귀하에게 맞선 증거에 대해 설명 또는 반박
- j.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날짜로 연기(또는 “휴정”) 를 요청
- k. 청문회가 끝날 무렵, 귀하가 왜 실업 보험 수당 자격이 있는지를 설명하거나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제기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는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진술

청문회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청문회 후, 행정법 판사는 귀하의 실업 보험 수당 자격 여부에 관한 정보를 담은 결정 및 결정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이 통지서는 청문회 후 가능한 빨리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결정 및 결정 통지서에서, 행정법 판사는 증거를 통해 확인한 사실, 조사 결과에 대한 이유 및 자체 결정을 발표하게 됩니다.

결정 및 결정 통지서에 있는 정보에는 이 행정법 판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항소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행정법 판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노동부의 전화 청구 센터로 전화하여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 판사 또는 항소위원회에서 귀하에게 수당이 초과 지불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하는 수당을 상환해야 합니다.